|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유관문제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24호  첨단기술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관철시켜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인증 관리방법>수정 발표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16]32호, 이하 <인증방법>) 및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첨단기술 기업인증관리 업무지침>수정 발표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16]195호, 이하 <업무지침>) 및 관련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첨단기술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실시에 관한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기술기업증서에 명기된 발급기간 귀속연도부터 세수우대 향유를 신청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서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의 첨단기술자격이 만료된 당해 연도에 새로 인증을 통과하기 전, 그 기업소득세는 잠정적으로 15%의 세율을 따라 선납하고, 당해 연말 전까지 여전히 첨단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간의 세금을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2.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세수우대를 향유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무부처는 일상적 관리과정 중 그 첨단기술기업의 인증과정 중 또는 우대를 향유하는 기간에 <인증방법>제11조에 규정된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 심사 후 인증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인증기구는 그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소하고 아울러 세무기관이 그 증서 유효기한 내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연도부터 이미 향유한 세수우대를 추징하도록 통지한다.  3. 세수우대를 향유하는 첨단기술기업은 매년 연말정산 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처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제76호)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비안표 및 첨단기술기업자격증서 이행 비안수속을 제출하고, 동시에 다음의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여 비치한다.  3.1 첨단기술기업자격증서  3.2첨단기술기업인정자료  3.3 지식재산권관련자료  3.4 연간 주요상품(서비스)핵심지원작용을 발휘하는 기술이<국가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규정범위에 속하는 설명, 첨단기술상품(서비스) 및 대응되는 수입자료  3.5 연간 직원과 과학기술인원 상황증명자료  3.6 당해 연도와 이전 2차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 및 동기(同期)판매수입비율, 연구개발비용 관리자료 및 연구개발비용 보조장부, 연구개발비용 구성명세서(구체적인 양식은 <업무지침>첨부2 참조)  3.7 성세무기관에서 규정한 기타자료  4. 본 공고는 2017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인증방법>에 따라 인증한 첨단기술기업은 본 공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 전은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인증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08]172호)에 따라 인증한 첨단기술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소득세 우대유관문제 실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203호)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76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자격 재 심사기간 기업소득세 예납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제4호)를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6월1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高新技术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24号  　　为贯彻落实高新技术企业所得税优惠政策，根据《科技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印发〈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的通知》（国科发火〔2016〕32号，以下简称《认定办法》）及《科技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印发〈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指引〉的通知》（国科发火〔2016〕195号，以下简称《工作指引》）以及相关税收规定，现就实施高新技术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公告如下：  　　一、企业获得高新技术企业资格后，自高新技术企业证书注明的发证时间所在年度起申报享受税收优惠，并按规定向主管税务机关办理备案手续。  　　企业的高新技术企业资格期满当年，在通过重新认定前，其企业所得税暂按15%的税率预缴，在年底前仍未取得高新技术企业资格的，应按规定补缴相应期间的税款。  　　二、对取得高新技术企业资格且享受税收优惠的高新技术企业，税务部门如在日常管理过程中发现其在高新技术企业认定过程中或享受优惠期间不符合《认定办法》第十一条规定的认定条件的，应提请认定机构复核。复核后确认不符合认定条件的，由认定机构取消其高新技术企业资格，并通知税务机关追缴其证书有效期内自不符合认定条件年度起已享受的税收优惠。  　　三、享受税收优惠的高新技术企业，每年汇算清缴时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6号）规定向税务机关提交企业所得税优惠事项备案表、高新技术企业资格证书履行备案手续，同时妥善保管以下资料留存备查：  　　1.高新技术企业资格证书；  　　2.高新技术企业认定资料；  　　3.知识产权相关材料；  　　4.年度主要产品(服务)发挥核心支持作用的技术属于《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规定范围的说明，高新技术产品（服务）及对应收入资料；  　　5.年度职工和科技人员情况证明材料；  　　6.当年和前两个会计年度研发费用总额及占同期销售收入比例、研发费用管理资料以及研发费用辅助账，研发费用结构明细表（具体格式见《工作指引》附件2）；  　　7.省税务机关规定的其他资料。  　　四、本公告适用于2017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2016年1月1日以后按《认定办法》认定的高新技术企业按本公告规定执行。2016年1月1日前按《科技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的通知》（国科发火〔2008〕172号）认定的高新技术企业，仍按《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高新技术企业所得税优惠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03号）和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6号的规定执行。  　　《国家税务总局关于高新技术企业资格复审期间企业所得税预缴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4号）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7年6月19日 |